

第226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12月19日(水)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501號)

議事日程

- 1. 간사선임의건
- 2. 소위원회활동보고
- 3.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審査된案件

- 1. 간사선임의건 1
 - o 간사(丁世均)인사 1
- 2. 소위원회활동보고 1
- 3.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19

(16시41분 개의)

- **委員長 姜在涉** 지금부터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立法調査官 石英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委員長 姜在涉** 수고했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6시42분)

-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측 간사로 활동해 오시던 金民錫 위원께서 위원직을 사임하시고 丁世均 위원께서 위원으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측의 간사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민주당 측에서 추천해 오신 丁世均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새천년민주당 간사로 존경하는 丁世均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丁世均)인사

- **委員長 姜在涉**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丁世均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世均 委員**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간사직을 맡게 되어서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모으고 협조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까 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姜在涉** 수고 하셨습니다.

2. 소위원회활동보고

(16시43분)

-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활동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재구성된 이후에 선거관계법 소위, 정당관계법 소위, 국회관계법 소위 이렇게 3개의 소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별개로 소관 법안에 대해서 심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각 소위별로 활동사항에 대한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이 나오셔서 각 소위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됩니다만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소위원장은 여야간에 교대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오실지 애매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각 소위별 활동사항을 종합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각 소위별 활동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9일 정치개혁특위 제2차 회의에서 선거관계법 소위, 정당관계법 소위 및 국회관계법 소위가 구성된 후 각 소위별로 소관 법안들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먼저 소위별 활동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거관계법 소위는 다섯 차례, 정당관계법 소위는 두 차례, 국회관계법 소위는 한 차례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별 회의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계법 소위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계법 소위는 총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1인 2표제 도입,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지방의원 유급제, 지방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 확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당관계법 소위활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관계법 소위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하여 중앙당 창당집회는 공고하되 지구당의 창당집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여성후보의 당선율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매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의 당 연락소 폐지 문제 등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관계법 소위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관계법 소위는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상임위 삭감예산에 대한 예결위 기속규정 신설, 국정감사 실시시기 합리적 조정 등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으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 국회출석요구 대상 확대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고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확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소위활동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權琪述 委員**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심사경과 보고에 그날 수석전문위원이 참석을 안 하셨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못했습니다.

○**權琪述 委員** 그래서 아마 보고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날 여러 건을 했는데 세 번째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포함시키자고 합의를 했는데 보고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건에 대한 토의과정에서 평소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무사안일하게 일을 처리했던 사람보다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문 문화를 개선하고 청문회법을 일부 보완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한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완전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는데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날 공교롭게도 선거관계법 소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두 군대를 동시에 못 가서 국회관계법 소위는 鞠慶福 심의관이 참석하고 저는 선거관계법 소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안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 委員** 그러나 보고는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요.

합의가 되었는데 뒤에 일부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청문회법을 일부 보완해야 된다는지, 공직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제한규정을 두자든지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여기에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완전합의된 사항을 이렇게 잘못 보고하면 안 돼요. 이런 보고는 하면 안 됩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權琪述 委員** 위원장,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 주

셔야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의를 다시 하는 것은 몰라도 보고를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는 보고대로 해주어야지요.

○**咸承熙 委員**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 咸承熙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소위별로 상당히 열심히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나오셔서 한두 가지 예만 들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토의를 하려면 우선 어떤 부분이 합의되었는지 서류를 갖고 하나하나 조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權 위원님, 咸 위원님 모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만 몇 가지 들어서 해버리니까 너무 간략해서 그 소위에 속하지 않았던 분들은 무슨 합의가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咸承熙 委員** 저는 위원장님 견해에 동의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수석전문위원이 합의된 부분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합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합의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그 조문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한다는 개정취지와 더불어서 워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서로 간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합의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국회관련법소위는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무가지 이상의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해서 아예 토론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다라고 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그 얘기는 옳다……

그런데 서로 간에 옳다는 데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그것이 합의입니까? 그 다음에 옳다고 의사합치가 된 개정안을 그대로 채택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수정할지에 대한 것이 나와서 그것은 그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떤 것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컨대 아까 존경하는 權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헌법상 위헌이다 하는 것과 위헌이 아니고 합헌일 수가 있다는 양론

이 있었고 가사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리이러한 조건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지금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이 여러 가지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지 국회의 사전스크린으로 자질을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식의 긍정적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제도를 채택하자는 데 대한 합의입니까? 긍정적 검토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합의사항이라고 즉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것은 100% 그 제도를 채택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 전제조건이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면 긍정적 검토라도 사실상 제도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합의가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합의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委員長 姜在涉**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朴承國 委員**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이 그날 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 하면 무리다 해서 민주당의 金成鎬 위원이 이 중에 국정원장, 검찰총장만 하고 나머지는 빼자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咸承熙 委員**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의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긍정적 검토지요.

○**朴承國 委員**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들으세요.

소위원회도 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불복은 할 수 있지만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지요. 그날 총 18건 중에 9건 통과, 4건 계속심의, 5건 폐기 이렇게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咸承熙 委員** 수석전문위원이 워딩해 왔나요? 그 워딩을 우리가 검토한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더 만남시다 해놓고 만난 적도 없이 갑자기 합의되었다고……

○**委員長 姜在涉** 잠깐만, 그런 문제를 이따가 얘기하십시오. 지금 무엇이 논의되었는지를 우선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것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합시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계법 소위하고 정당관계법 소위에서는 일단 합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전체 위원회의 의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인 효력이 있느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로 하고 저희들은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한 조 한 조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먼저 선거관계법 소위의 합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납본제도입니다. 선거 시에 일반정기간행물 1부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납본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선거에 1인2표제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서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단체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을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축협법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하나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기간이 현재는 14일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인 17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에 보면 “선거인명부의 지체없는 교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기관에서 너무 힘들어서 신청만 하면 24시간 이내에 교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등록기간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당법 31조와 관련이 있는데 정당법 31조에 여성후보자를 일정한 비율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법 31조에 따라서 여성후보자를 일정한 비율, 즉 다시 말하면 100분의 30을 추천하지 않은 등록신청은 거부하게끔 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등록신청 관련사항입니다.

현재는 소득세, 재산세만 밝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합토지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후보자등록 시에 추가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과기록 공개를 제한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공개하니까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 한해서만 전과기록을 공개하고 끝나면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탁금을 조정했습니다.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도 1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시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선거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기탁금 반환요건 조정입니다.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이 부분을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신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했으며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대상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새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강좌를 개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교양강좌는 금지했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을 금지시켰습니다. 선거기간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음은 선전벽보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으로 다 같기 때문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습니다.

중복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공고규정은 제122조의2 제1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정리했고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습니다.

현재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읍면동 별로 1매만 게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에만 이것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소품 중에서 어깨띠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과열선거 방지 차원입니다.

다음에 후보자의 명함수교 허용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한해서 후보자의 성명, 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현직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수교하는 행위만 허용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수교하는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다음은 선거공영제 확대입니다.

현수막제작비, 전화홍보비, 선거용 홈페이지 제작·관리비용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개표사무원 위촉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만 하니까 너무 부담이 커서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의 직원 외에 정부투자기관, 공공조합, 지방공사의 직원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게재사항입니다.

재·보궐선거 시에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고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도 투표용지에는 기호·정당명을 표시하고 후보자는 빼도록 했습니다.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만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권을 부여하되 선거법 내에서만 인정하기로 하고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 등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선전물 자료제출요구입니다.

불법선전물의 우송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시 관계 우체국장에게 당사자의 성명, 주소, 인적사항 외에 발송통수, 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대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 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 한하여 읍면동 단위로 개표하여 선거개표의 부담을 덜어주게 했습니다.

다음 선거부정감시단 중 일부 인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은 선거기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등록신청 1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보서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입니다. 월급제로 할 것인지 수당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지방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는 19세와 현행규정대로 하자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의원의 다른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기를 조정하는 문제,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하한규정을 폐지할지의 여부, 당선무효 벌금액의 상향조정 여부,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시기 및 구성방법, 선거기간 중 정강·정책 홍보물의 제작·배부 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관계법 소위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 정당관계법 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사항입니다.

창당집회개최 일간신문 공고대상에서 지구당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당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당비 부담은 타인에 의해서 당비를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직선거의 여성후보 추천입니다.

비례대표선거구 시도의회 의원선거후보자 중, 현행 법규정은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순위 순서로 매 2인마다 여성 1인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당원 등의 매수금지입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추천·선출 시 당원 및 후보자 등에게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국회의원 총선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당관계법 소위는 합의사항 중에 잠정합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당의 유급직 사무직원 도입문제입니다.

지구당에 2인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선거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 연락소마다 각 1인을 추가해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논의사항으로는 읍면동 당연락소 폐지 여부,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추천비율문제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이 제기한 사항으로 당원이 아닌 자가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후보자 선출 시의 오픈 프라이머리 일렉션(open primary election)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입당 또는 탈당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당관계법 소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회관계법 소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합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한 용어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의장의 직무대리부의장 지정규정 보완, 여성위원회를 겸임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문제, 현재는 특위로 되어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지정규정 보완’이라고 해 놓고 어떻게 보완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것은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못 깔았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보완’ 이렇게만 해 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날 공교롭게도 2개 소위가 동시에 개최되어서 제가 두 군데를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선거법 소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지요.

○**安商守 委員**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나와서 보고하면 되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鞠慶福 심의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그렇게 하세요.

○**立法審議官 鞠慶福** 鞠慶福 심의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직무대리부의장 지정규정은 현행법규상 의장님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님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법정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朴承國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의

장님께서 권위된 경우가 아닌 아주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혼수상태에 있다가나 이랬을 때는 물리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정대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구체적인 워딩작업은 저희 실무진한테 위임한 상태이고 원칙적으로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여성위원회 설치문제입니다.

현행 여성위원회는 여성특별위원회인데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설위원회로 하되 여성위원회 소관업무의 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분량을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처럼 겸임상설위원회로 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범위를 전자문서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국회법이나 국정감·조사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문서에 의한 서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자매체를 이용한 서류제출도 가능하도록 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종종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속을 받는 규정을 두자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현행 국회법 해석에 의하면 의장은 표결의 개시나 표결의 선포를 지정된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본회의에서 사회석이 아닌 장소에서도 표결의 선포 내지 의결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정된 의장석에서만 표결의 선포 및 의결을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국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크로스보팅,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유투표제의 규정을 도입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국회법에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개최되고 그다음 날부터 국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결산심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국회법의 원칙적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칙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정기국회를 개최한 지 15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문을 조정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2일 이내에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작성기간도 2일이던 것을 청문회 실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5일로 하고 인사청문회 기간과 보고서 작성기간은 각각 3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의 발의의원 의견청취 의무화 사항이라든지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사항이라든지 개인휴대 컴퓨터의 본회의장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서 그대로 두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와 국회출석요구대상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아까 權琪述 위원님께서 합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대상에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포함시키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헌설과 합헌설이 있다는 학계의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뒤에 토론과정에서 金聖鎬 위원, 權琪述 위원, 朴承國 위원님께서서는 가급적 국정원장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威承熙 위원님께서서는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서 ‘현재의 청문회 문화로는 안 된다. 따라서 청문회 문화가 개선되고 공직후보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원칙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축조심사는 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진에서 워딩을 해서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權琪述 위원님과 朴承國 위원님, 威承熙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權琪述 위원님과 朴承國 위원님은 “합의를 봤다”고 말씀하셨고 威承熙 위원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말을 한 것이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이것이 ‘합의가 되었다’라고 보고서에 올릴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지금까지 3개 소위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위가 해 온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견해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용어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琪述 委員** 우리 국회관계법소위원회는 12월 6일 朴承國 위원과 威承熙 위원, 金聖鎬 위원, 鞠慶福 심의관 외 한 분의 심의관이 같이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본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 그 의결을 부의하기 위해서 의사를 취합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이것은 여야 협상체가 아니고 분명한 회의체입니다.

그날 우리가 10시에 시작했다가 상임위원회와의 중복문제 때문에 정회했다가 11시30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중식도 그 자리에 배달해 먹으면서 본회의 때까지 강행군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난 후에 또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해서 18개 사항 중에서 9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 항은 계속 논의키로 하고 5개 항은 폐기하자 이렇게 대충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는 이 인사청문 대상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鞠慶福 심의관이 그동안의 청문회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즉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난 뒤에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金聖鎬 위원과 朴承國 위원께서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威承熙 위원께서는 열심히 일한 검사 출신에게 흠결이 발생하고 오히려 몸조심을 위해서 무사안일하게 지낸 사람에게는 흠결이 생기지 않는 즉 대충 설거지를 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오히려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그릇을 깬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청문회문화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본회의를 마치고 2차로 또 이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에 즉항별로 “이 문제는 어떠냐” “합의다” 또 “이 문제는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청문의 대상에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威承熙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다”하고 넘어갔던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바로 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한다면 소위원회도 속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문위원들이 여당 눈치보고 또 야당 눈치보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정확한 보고가 되지를 않는다, 언론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누락시키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威承熙 委員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언어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싫습니다.

그리고 權琪述 위원님 말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속기하라고 제가 아까 지시를 했고 단지 합의라는 용어를 굳이 쓰시고 그 합의했다는 의제를 전체회의에 상정할 때 “현행 청문법이나 청문회문화의 개선을 전제로 한 두 직책에 대한 청문제도의 전향적 검토에 대한 합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청문 문화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청문법은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토론해 주신다면 저는 좋습니다. 그것을 합의했다고 한다면 동의하겠는데 거두절미하고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조건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조건에 합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채택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알아서 받아들여서도 좋은데 앞의 전체부분을 빼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합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합의라는 용어를 굳이 쓰시고 싶으시면 “현행 청문법과 청문회문화의 개선을 전

제로 한 인사청문회제도의 전향적 검토에 대한 합의” 그렇게 쓰시면 저는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그 문제는 그날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朴承國 委員 선거관계법 심사경과보고 4페이지 후보자의 명함수교 허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흔히 선거할 때 공보에만 잘 쓰면 되고 명함에는 엉터리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나는 무슨 신동들이 다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박사다 해서 있지도 않았던 경력을 명함에 잔뜩 써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전되어서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아는데 선거 공보에는 그것을 다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명함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명함에 허위로 기재를 했을 때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委員長 姜在涉 여러 위원님들, 지금 소위에서 활동한 사항을 전부 보고했는데 소위에서 보고한 것이 당장 우리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소위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세련되게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고 또 통과 못 시킬 수도 있는 사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논의된 것을 정제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위원들이 정제작업을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게, 또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朴承國 위원님 말씀처럼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보완하자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법안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裕哲 위원님 말씀하세요.

○元裕哲 委員 지금 우리 정개특위에서 법사위에 의견을 낼 안이 있어서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읍·

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센터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행정지침에 의해서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우리 소위의 합의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또 선거기간 개시일 전 18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을 금지시키는 이런 주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선법에 이것을 반영시킬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개특위안으로 지금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사위에 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이용하는 단체장들의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관계법소위에서도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합의를 봤는데 선행조건으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개특위안으로 법사위에 의견을 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姜在涉 宋永吉 위원님 말씀하세요.

○宋永吉 委員 우리 정개특위 각 소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형식적 요건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당론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들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소위원회에서 계속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보고서 배포와 의정보고회 제한규정의 신설 필요성입니다. 제가 당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을 주장했습시다마는 당론으로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정치신인의 참여와 정치개혁을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한테는 4년의 임기 동안 내내 의정보고서와 의정보고회를 횡수와 매수의 제한 없이 허용하고 더구나 선거운동 개시 바로 전날까지 법정 홍보물보다 훨씬 좋은 컬러책자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매수의 제한 없이 배포하게 허용해 놓고 정치 신인한테는 명함도 배포하지 못하고 현수막도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공정한 법률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로 고초를 치르기도 했는데 이것이 현재에서 합헌판결이 났습시다마는 저는 이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도 이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득권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거운동 개시 한 달 전 정도에는 의정보고서나 의정보고회를 할 수 없게 해서 정치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해야 지 4년 임기 내내 놓고 있다가 선거운동 개시 바로 전날 집중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행위는 사실상 법정선거홍보물 배포행위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당법에 대해서인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저희 당의 정당개혁을 위한 당쇄신과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여부의 문제입니다.

16대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일부 인사들의 공천자체에 대한 낙천운동 즉 당원이 아니면서도 그 정당에서의 낙천을 주장하는 시민운동을 펼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의 합법성 여부가 지금도 논란이 됩시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기존의 정당 자체가 단순한 사적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고 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록 당원이 아닌 국민이라 할지라도 정당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따라서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외생적인 정당, 당비를 내는 당원이 실질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정당구조하에서, 비록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나의 세금이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일반국민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의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고 또 진정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원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즉,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

당의 예비선거가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문제에 대해서는 공선법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규정 제1항제4호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비후보 선거운동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다고 한다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여부의 조치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우리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현행 정당법 제20조에 의하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당과 창당준비위원회에 직접 서명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되어야 당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과 같은 인터넷시대에,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보고 아까 국회법 관계 소위원회에서 서류를 전자문서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다 합의한 것을 보더라도 또 전자인증법이 통과된 것을 보더라도 E-메일이나 FAX, 우편을 통해서라도 입당, 탈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 추세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저희 당이나 한나라당이 많은 당원의 참여 속에 민주적 경선을 통해서 새롭게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이 시급하고 더구나 저희 당이 이번에 새롭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이 곧 당무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실시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진지하게 논의되어서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습니다만 저희 정당관계법소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합의한 것이 당원 등의 매수금지 처벌규정을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는 상징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선법에 의해서 공직자선거사범은 처벌됩니다만 정당 내부의 후보자추천 과정에서도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매수행위를 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폐지문제와 지구당 유급직 직원문제는 각 지방출신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이견이 제기되어서 충분한 심의

를 거쳐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수고하셨습니다.

安商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 宋永吉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제의를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선거관계법소위원장으로서 元裕哲 소위원장과 공동으로 사회를 보았습니다. 사실 의정보고서를 제한하자는 부분이 우리 당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국회의원의 경우 사실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지역구에 갈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한 번 갈 정도이니까 의정보고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요.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 원외지구당 위원장이나 후보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은 1년 내내 지역에 있으면서 상가집에도 가고 결혼식장 등 온갖 군데를 다 가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채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국민의 후보참여 문제는 우리 선거법 전체와 연결해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선거법의 전체적인 흐름의 주된 요소는 선거의 과열 방지,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국민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허용하고 시민단체가 사전선거운동하는 것은 막을 것입니까? 정당은 허용되고, 정당도 중앙당이 무슨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그러면 모든 선거에 이것을 다 허용해야 될 것인가? 이를테면 각 정당이 결국 득표의 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용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결국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의 선출에 있어서 우리 정당법의 기본정신은 각 정당이, 정당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결사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의 선출도 당연히 정당이 추천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섯 번의 선거관계법소위를 열면

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元裕哲 위원님께서서는 민주당의 소위원장을 하시고 저는 한나라당의 소위원장을 맡아서 서로 번갈아 사회를 보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며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개혁특위가 금년 내내 활동을 하면서 지금 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의만 무성했지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요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계속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합의된 부분, 각 당에서 별 이의가 없는 부분, 더군다나 전향적으로 선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으면 각 당에서 서로 협조해서 1차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켜 주시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이라도 다시 선거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아예 그것을 하기 전이다, 합의가 다 안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홀딩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략이 아니겠습니까?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부분대로 하는 것이 옳지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과 연계해서 다른 것 통과시켜주지 않고 이것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당실무와 관련해 합의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합의해서, 우리가 법안심사소위를 만들어서 적어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姜在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발언을 안 하신 분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威承熙 위원 먼저 발언하세요.

○威承熙 委員 저는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factor가 제도와 행태라고 보는데 제도는 결국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행태는 정치인의 행태와 유권자의 행태로서 이 네 가지가 정치문화의 factor라고 봅니다.

유권자의 행태는 우리가 여기서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의 행태인데 국회법이 정치인의 행태를 규율하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법에 규정된 많은 좋은 조항들을 개정해 앞서서 어떻게 이것을 준수하게 하느냐, 준수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국회의원이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는 한 여기에서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국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쉽게 얘기하면 상임위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본회의에서 열심히 정책적인 발언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금지규정들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좋게 평가받아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장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정치문화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개혁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나 둘 바꾸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하는 것이 전반적인 소감입니다.

예컨대 재판 중이거나 소추 중인 사건 또는 사생활 침해행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규정들이 지금 그냥 사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절절매고 있는 판에 전부 당 행사 내지 자기 지역구 행사에 간 사람과 상임위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법안통과와 정책심의에 열심인 사람을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정치인이 어른인 이상 출석부를 부르고 결근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평가될 수 있는 제도가 차제에 국회법에 마련되어야 진짜 정치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한 검토가 국회법에 좀 소홀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 모든 법이 마찬가지로이지만 일단 법을 읽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되고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법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용어조차 쉬운 한글로 바꾸고 있는 마당인데 단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장 전체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조항들이 아직도 법조문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가 법조인이라고 저한테 이런 것은 해도 되느냐 하고 묻지만 저 역시 검사 시절에 공안부에서 선거업무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대답을 못해서 계속 조문을 찾아봐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선관위에 질의해야 되고……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손질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예결위가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예결위는 국회의 고유기능인 국정감사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대단히 전문화된 지식과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른 상임위원회와 겹치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상임위원회가 우선이고 예결위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른 자리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또 그 질의내용이라는 것이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임위원회의 질의사항과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소한 보통 위원회처럼 2년 임기의 위원회가 되어야겠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디에도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감표위원이 문제되어서 국회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표위원은 당에 관계없이 의장직권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했는데 그 감표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떤 사정이든 나오지 않을 때에는 감표위원 없이 그대로 투표가 진행되든지 아니면 바로 다른 감표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주든지 하는 조항이 만들어졌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鄭文和 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예, 鄭文和 위원 발언하세요.

○鄭文和 委員 지금 우리가 정개특위를 하면서 3개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자 논의되었던 사항 중에서 그래도 합의되었다는 사항이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논의하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 중 이의가 있는 사항들이 먼저 논의되어야 하고 없다면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먼저 통과시켜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부분이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논의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있을 때 또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기본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사항부분만 논의하여 넘기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오늘 여기에서 합의된 사항을 처리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여야에서 합의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것을 합의해 놓고 얘기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委員長 姜在涉 지금 鄭文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바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칙대로 하려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몇 십일간 논의해서 넘어갔으니까 그 합의된 것을 놓고 여기에서 이견이 있나를 물어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되면 내일이나 모레 우리가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서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도 않아서 일단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밤이든 내일이든 합의해서 내일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따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합의하기 위해 또 정회해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몇 분 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빨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들이 모여 통과시킬 목표를 향해서 검토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 저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소위원회를 해보면 각 당이 그런 의견을 당의 의견으로 가져오지도 않고 논의도 안 해 놓고 여기 와서 그런 것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 위원회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소위원회에서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각 당에서 논의하여 당론을 모아서 토의할 자료를 빨리빨리 소위원회에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元裕哲 위원 말씀하세요.

○元裕哲 委員 安商守 위원님과 鄭文和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거관계법 소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요한 사항을 많이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이 지금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의원 유급제 문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문제, 2002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일 문제, 선거권 연령문제 등등 아주 주요 쟁점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아주 기형적인 구

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한데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무슨 부속물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에서 출발해서 지방의원을 유급화 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뜻 있는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을 현실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아주 참다운,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굳이 예로 안 들더라도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이미 실시가 되고 있고 영국, 프랑스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급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양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유급제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참다운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인식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해 나가야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安商守 위원님과 전문위원께서 이미 합의된 것은 오늘 먼저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계속 논의를 해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개특위 소위원회 활동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알려져 왔고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합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당 간사위원들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신 것 같은데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별로 전체 대체토론에서 나온 안을 보완해서 법안을 하나씩 또는 일괄 타결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朴承國 委員** 지금은 지방의원 수당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도 유급제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의원이 80일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원은 120일 일을 해요. 그러면 불과 두 달이나 석 달 동안 일을 하는데 열두 달 월급을 주라고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무노동 유임금이 되는 셈인데 정부에서 ‘일하면 돈 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의원들에게는 일을 하지 아니해도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안은 수당이라는 것은 나와서 일할 때 주는 것이니까 지금 주던 수당이 적으면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월급을 주라는 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전부 1년 동안 나와서 일하면 될 것 아니냐 하겠지만 元裕哲 위원이나 나도 지방의원을 해 봤지만 1년 나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일은 없고 열두 달 월급을 주고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심지어 지방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왜 국회에서 우리한테 월급을 주려고 하느냐, 우리는 월급을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1년을 일하지도 않는데 나가서 꼬박 꼬박 월급을 받느냐’고 당사자가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무슨 뜻으로 반드시 월급을 주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宋永吉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려면 모를까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것이라면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순기능을 하게 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수많은 예산의 낭비를 지방단위에서 차단시키고 견제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구청장이나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현행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원 징계대상도 안 됩니다. 형법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검찰로부터 소추당하지 않는 한 완전히 무소불위의 소통령으로서 전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예산낭비와 어떤 부당한 행정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오로지 지방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방의회를 사실상 회기도 제한시켜 놓았고 회기 때만 수당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건설업자라든지 그 지역의 토호세력들, 구청장 동창회 회원들이나 구청장, 시장의 하급 선거운동원 비슷한 사람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고 실제로 시민운동가나 젊은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결합해서 새롭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할 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시정업무나 시의원, 구의원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은 그야말로 풀뿌리 업무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할 일을 덜어 주고 역할 분담도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없이 회기 때만 그냥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회의 없을 때는 국정업무를 수행하고 입법준비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들도 회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시정업무를 감시하고 현장을 시찰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의원도 평균해서 나누면 월 15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 같은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돈은 돈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괜히 명분상 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유급제는 아니고 명예직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런 현실을 타파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급여를 보장해 줘야 실제로 새롭게 지방의회에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지방의회가 내실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당의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曹正茂 委員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당원이 아닌 자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입당 또는 탈당을 가능하게 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선진적이고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입당, 탈당신고를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편리하고 이 삼십대 젊은 층들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고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간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신청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PC방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 허위신청자를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국민참여 경선제 실시 중 당원문제에 대해서는 경선참여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장점이고 폭넓은 민의수렴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단점은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이 모호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해되며 당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불분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엄청난 경선비용이 들고 외국의 사례에도 거의 없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은 물론 미국도 40여 개 주가 당원만이 참여하는 폐쇄적인 예비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할 때 엄청난 경선비용이라는 인터넷선거의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농촌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컴퓨터 활용이 용이한 젊은 세대와 구세대 사이에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구세대의 경우 투표 그 자체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커의 침입이나 내부관리자로부터의 정보유출과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대리투표문제, 전자서명이나 본인확인 등 적절한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본인 투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투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여기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게 돼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직선거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은 당원등록의 절차를 거친 후 참여하도록 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관계에 있어서 읍·면·동 폐지문제를 어제 宋永吉 위원이 제기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의 부활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원칙적으로는 지구당을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활시킨다면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후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의견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許泰烈 위원 질의하세요.

○許泰烈 委員 許泰烈 위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 1월에 발족되어서 만 1년간 나름대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정치개혁 과제가 시급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장 선거시기만 하더라도 월드컵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좀 당겨달라고 하고 있고 또 각급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데마다 근 70% 가까운 국민들이 이것을 당겨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 하나를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선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년 선거에 내 선거구는 어떻게 되느냐, 정수는 어떻게 뽑히느냐 이것이 선거의 기본 출발점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의원 유급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인구가 그동안에 변동이 되었고 행정구역이 통·폐합으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가만 있어도 선거구는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마저도 협의는 고사하고 착수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국민 앞에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지난 1년 동안 활동해 온 결과인가 생각할 때 정말 스스로 수치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朴承國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국가 현실에서 4000명이 넘는 고위 정무직 공무원을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전 공직사회에서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슬림화 하느냐 이것이 초미의 국가적 과제인데 정치개혁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지방의원의 전문화나 지방의회 활성화라는 큰 명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채택하는 것이, 어떻게 4180명에 이르는 광역 기초의원들한테 봉급을 주어 가지고 또 이것이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宋永吉 위원께서는 구미 각국의 지방의원들이 다 유급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기관 구성이 기관대립형입니다. 의원은 그야말로 의결기능만 담당하고 단체장은 집행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구미의 대부분은 지방의회가 기관통합형을 씁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바로 자치단체의 장을 겸하고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이 보통 집행기관의 국장을 겸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의원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앞으로 갈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민경제가 어렵고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판국에 이렇게 부단체장급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어 가지고 지방의회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국민의 정서를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원의 여성 지역구 공천 의무비율을 우리가 정하고 그 공천비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제규정을 두자고 저희 당도 요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그 관련법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방의원 광역 비례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역구 문제도 이왕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면 이 점에 대해서 보다 강제적인 조항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권의 신장이랄까 또 정치참여에…… 더군다나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데 우리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단을 미루고 있는지 저희들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정치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감을 높여서, 선관위의 추측에 의하면 약 1만 명이 넘는 입지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행정기관이,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이 후보자들과 행정기관들에게 선거준비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방의원 유급제 안 하면 모든 법안 처리도 연내에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져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1년 12달을 각 당마다 자기 당론도출을 위해 사실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들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무런 결론 없이 이번에 연내 입법처리하기로 합의된 사항조차도 입법처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개혁특위 전체회의가 또 다시 소집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위원장께서는 합의된 사항만이라도 연내 입법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물어서 여기에 많은 국민의 각계 대표들도 와 계시고 언론에서도 와 계시니까 이 점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委員長 姜在涉 예, 알겠습니다.

朴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錫 委員 우선 존경하는 朴承國 위원님께서 명함의 허위 기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출마하면서 명함 자체를 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소위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조치다, 당연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명함의 효과가 선거홍보 못지 않은 만큼 선거홍보에 상응하는 벌칙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鄭文和 위원님께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합의된 것만이라도 조문을 법률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개특위가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뭔가 보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응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개특위가 3개 소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소위에서 제출한 안건을 본 전체회의에서는 오늘 처음 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한번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갖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曹正茂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경중도 있지만 시급하고 덜 시급한 완급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宋永吉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인터넷·팩스·우편으로 입당 또는 탈당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당으로서 다 아시다시피 3월의 전당대회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1월에는 이 법이 개정되어야만 전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許泰烈 위원님께서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하려는 1만 여명의 사람들이 이 법 개정을 빨리 해주었으면 하고 기대한다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 않게 빨리 결정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 연령인하 여부입니다. 출마자 1만 여명도 중요하지만 19세에 해당되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 문제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기관에서는 민법에 성년의 연령을 19세로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9세로 인하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고 상법상 책임을 지는 거래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정신연령이나 신체조건이 19세면 책임 있는 투표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에 관해 좀더 진지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 토의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대충 큰 가닥을 잡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다음은 鄭文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文和 委員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다룰 사항이 있고 다루지 않을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 기초자치단체 유급화 문제라든가 광역자치 의원들의 유급화 문제는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겸직사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원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 의회기초제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치개혁특위에서 간단히 다룰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를 다루는 행자위나 정부, 또 국민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 정치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처음 만들어질 때 충분한 논의를 해서 명예봉사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 버리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자기네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봉급도 60% 이상 봉급을 못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기관장 정도의 사람들에게 봉급화를 만들어 줘 가지고 더 부담을 줄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또 좀더 나은 사람들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봉사할 수 있게 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또 왜 그런 의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돌려줘 가지고 지방자치를 다루는 쪽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다뤄 가지고 다른 것까지 붙잡아 두는지 나는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在涉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소위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밤을 새워 가며 얘기해 봐도 여기서 결론 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중에는 이번 회기 중에 합의한 부분은 그래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러면 무엇인가 조문 정리도 하고 오늘 나온 의견들도 반영시키고 또 가닥도 잡기 위해서는 3개 소위 내용을 전부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밤을 새우든 뭐를 하든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과시켜 보고 합의가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토의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꼭 마무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어지간하면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曹正茂 위원님 질의하시고 宋永吉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끝내기로 하시지요.

○曹正茂 委員 한나라당의 許泰烈 위원과 鄭文和 위원님께서 유급제를 반대하셨는데 저는 유급제를 찬성합니다.

한나라당 자체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유급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시의회가 그 지역의 토착세력화, 그리고 건달들로 다 선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유급제를 해 가지고 진짜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방자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급제로 일하는 지역의 토호세력, 돈 있는 사람, 건달들이 봉사한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무원이라든가 외부의 실력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 지역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점진적으로 지자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당 자치회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고 지금도 유급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朴炳錫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찬성하고 있고 또 선진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정보격차 해소방법을 먼저 모색하고 또 하나는 국민은 다 똑같고 유권자는 다 똑같은데 컴퓨터 활용이 용이한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 해결 방안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당관계법, 宋永吉 위원께서 경선 시 당원 매수행위에 대해 말씀을 제기했는데 금전은 처벌하고 물품에 대해서…… 물품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선 문제는 당내 문제니까 당 자체에서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다음은 宋永吉 위원 질의하시지요.
○宋永吉 委員 존경하는 曹正茂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해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曹正茂 위원님께서 항상 정치개혁을 주장하시고 심지어 읍·면·동뿐만 아니라 지구당까지 폐지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구당에 한해 직접 서명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해서 당원 명부에 등재해야 당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업무를 수행할 지구당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E-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입당과 탈당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曹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허위의사 확인 여부나 허위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으로 은행 입출금도 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증번호까지 받아 가지고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이 무슨 이권이 있다고 당원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위로 하겠습니까?

아무튼 당 내부에서의 당원 의사확인 여부는 당 자체의 당원 심사기준에 의해 처리될 문제이고 일단 국민의 참여와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이러한 전근대적 수단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박는 것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보격차의 문제나 인터넷투표의 문제는……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와 인터넷투표는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당에서도 인터넷투

표가 가지고 있는 해킹의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 때문에 도입여부가 신중하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무튼 인터넷투표의 병존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당원이 아닌 耆라 할지라도 지지하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지…… 그것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당의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하에서…… 작년도도 시민단체가 왜 낙천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들이 당을 만들 수는 없고 딱 정해진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싫으면 투표를 안 하고 가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투표율이 저하되고 정치를 외면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공적인 정당이고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정당…… 제1야당,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 당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후보자 선출과정에서부터 참여하게 만들어야 진정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또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당의 소수 개혁파나 보스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낙천되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가 공천과정에서부터 반영되어서……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 공천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한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姜在涉** 다음 趙培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培淑 委員**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曹正茂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의회의원 유급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을 알기 전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좀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최초의 출발은 옛날 시골 같은 지역에서 명예직, 봉사직으로 공동체에서 일했던 명예봉사직과 비슷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사회가 되어서 상당히 복잡다단해졌고 전문성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생겼고 지방의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이 제도가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는가, 결국 좋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서 그 지역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급화로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

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許泰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까마는 여성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는데 실제로 현실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도는 매우 낮습니다. 국회의원 수나 정책참여 비율이나 경제활동 면에 있어서 외국과 비교해 보면 OECD 6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6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남녀동수공천법이 있어서 동수로 공천을 안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녀동수공천법이 발효가 되고 나서 올해 7월에 선거가 치러졌는데 시의회 의원의 47%가 여성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개특에서 여성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그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趙培淑 위원님이 하자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데 趙 위원님이 설득 좀 많이 해 주세요.

○**趙培淑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鄭文和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예, 말씀하세요.

○**鄭文和 委員** 鄭文和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양쪽 간사가 속하지 않은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그쪽 소위원회에서 토의했던 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소위원이 되어야 하니까 그쪽 소위원회에 속했던 위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알겠습니다.

다음 權琪述 위원 말씀하십시오.

○**權琪述 委員** 저는 지금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정치개혁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개혁을 하는 데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당이 야당될 수도 있고 야당이 여당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일순에 모든 개혁을 다 달성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가능한 것부터 먼저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동안 소위에서 토의를 통해, 또 전체회의를 통해 이견이 없고 합의된 개혁사항부터 법제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宋永吉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선거일정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장의 월권, 탈권 예방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해야 될 것이 대단히 많은데 모든 사항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된 개혁사항까지 묶어서 지연시키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합의된 가능한 개혁사항부터 처리하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丁世均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경위원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許泰烈 간사님과 權琪述 위원님께서 합의된 사항부터 빨리 법제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 개혁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미결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합의되었거나 합의에 이른 사항은 아주 사소한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법을 만들기는 좀 덜 성숙되었다,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의를 한 다음에 법제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 법을 고치고 내년 1월에 또 고치고 내년 2월에 또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연말까지라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봐라 하는 점을 우리가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노력을 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급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론으로 채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단체장급의 대우를 해 주자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급공무원을 양산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단지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단체장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 당이 훨씬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50%,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좋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 당이 먼저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30%를 꼭 할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당은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상향식으로 공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안에 대해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 법안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8시30분)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3항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의한 것도 소위별로 합의한 내용 등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여야별로 3인씩 총 6인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방법은 조금 전에 鄭文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그렇게 여야별로 간사 1명을 포함해서 3인씩 총 6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사께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 명단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가능한 한 정치개혁 성과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出席委員(14人)**

姜在涉 권琪述朴炳錫朴承國
 宋永吉安商守元裕哲李海鳳
 鄭文和丁世均趙培淑曹正茂
 咸承熙許泰烈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전문위원 李昌熙
 입법심의원 文濟豊
 입법심의원 鞠慶福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 및 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정치개혁특별	金民錫	丁世均	새천년민주당

○議案回附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10월24일 김홍신·권기술·심재권·정장선·김희선·김민석·김부겸·장성민·김명섭·이재정·김근태·김원웅·정병국·오세훈·서상섭·이원형·이부영·추미애·김성순·원희룡 의원 발의)

10월25일 회부됨.

國會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

(11월27일 오세훈·김동욱·안경률·이종걸·강성구·정장선·이병석·정진석·이강두·손학규·심규철·장성민·남경필·정병국·윤경식·김락기·송영길·강운태·이강래·박종희·이주영·김영춘·신현태·김덕룡·이부영·윤한도·손태인·박근혜·김성조·안영근·심재철·원희룡·김용학·이성현·이승철·이상득·권오을·홍사덕·김부겸·신기남·정의화·김용갑·박시균·이호웅·정인봉·김학송·박세환·김원웅·김정숙·이상희·안택수·홍준표·주진우·박주천·허태열·신경식·임인배·엄호성·장영달·이미경·이재정·윤영탁·김일운·박종근·서상섭·박원홍·백승홍·이한구·박종웅·윤여준·김홍신·임중석·권기술·김태홍·이희규·윤두환·임진출·이상배·강숙자 의원 발의)

11월28일 회부됨.

政黨法中改正法律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

(11월30일 박상천·이상수·장성원·함승희·김택기·김성호·송훈석·박종우·정세균·김성순·박주선·원유철·이낙연·추미애·송석찬·신기남·송영길·조배숙·박병석·이재정·조재환·김민석 의원 외 95인 발의)

12월1일 회부됨.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12월5일 원유철·송영진·이창복·하순봉·김원웅·심재권·윤경식·오세훈·신계륜·김화중·이근진·이해봉·이희규·심규섭·전갑길·이재선·박양수·전용학·안동선·정장선·박창달 의원 발의)

12월6일 회부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

(12월5일 박상천·이상수·장성원·함승희·김택기·김성호·송훈석·박종우·정세균·김성순·박주선·원유철·이낙연·추미애·송석찬·신기남·송영길·조배숙·박병석·이재정·조재환·김민석 의원 외 95인 발의)

12월7일 회부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고홍길 의원 대표발의)

(12월7일 고홍길·강신성일·강창성·강창희·김락기·김일운·김정숙·김찬우·박관용·박세환·박시균·박희태·손희정·신영균·임태희·정병국·정의화·정재문·최병렬·하순봉·홍사덕·황우여 의원 외 114인 발의)

12월8일 회부됨.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12월7일 이해봉·강재섭·고홍길·권기술·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12월8일 회부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12월7일 안상수·강재섭·고홍길·권기술·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12월11일 회부됨.

國政監査및調査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

(12월17일 권기술·강재섭·고홍길·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12월18일 회부됨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12월17일 권기술·강재섭·고홍길·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이상 2건 12월18일 회부됨.

政黨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

(12월17일 오세훈·김근태·김락기·김부겸·김성조·김영춘·김용학·남경필·박인상·박중희·신계륜·신현태·심재철·안영근·안택수·권오을·원희룡·윤경식·이성현·이승철·이연숙·이주영·정병국·정의화·홍준표 의원 발의)

12월18일 회부됨.

國會法中改正法律案(권기술 의원 대표발의)

(12월17일 권기술·강재섭·고홍길·권오을·김기춘·김정숙·박승국·안상수·오세훈·윤경식·이주영·이해봉·전재희·정문화·정병국·정형근·조정무·최연희·허태열 의원 외 117인 발의)

12월18일 회부됨.

국회관계법개정에관한의견제시

(12월19일 의장으로부터 관련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시함)

○ 請願回附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정치관계법개정에관한 청원

(10월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은방희 외 954인 으로부터 鄭均桓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31일 회부됨.

지방의회의원의유급화및공직선거입후보시조기퇴 직규정개정에관한청원

(11월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27 주공 아파트 522-50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용부 외 15인으로부터 朴相千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1월29일 회부됨

지방의회의원의유급화및공직선거입후보시조기퇴 직규정개정에관한청원

(11월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2동 328 한진타운 121-1702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장 정금영 외 13인으로부터 朴相千·鄭大哲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1일 회부됨.

정치관련법개정에관한청원

(12월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2가 8-25 김모임,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307호 이춘호,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8-3 대진빌딩 4층 조현옥으로부터 李熾淑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12월5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의 심사의 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 기간을 정하여 회부됨) 12월5일 회부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청원

정당법개정에관한청원

정치자금법개정에관한청원

(이상 3건 12월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1006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지은희 외 1인으로부터 李在禎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12월15일 회부됨.